

#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5. 12. 29.  
내 무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22일

·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0회 정기회

· 제7차 내무위원회(1995. 12. 26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· 제8차 내무위원회(1995. 12. 29.)번안동의에 의한 재심의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'89. 5월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'92. 12. 31. 조례개정으로 '95. 12. 31.까지 연장되었으나,
- 현재 추진중인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시 1년간 시한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공영개발사업단 시한연장

1995. 12. 31. ⇒ 1996. 12. 31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창환)

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조례의 부칙조항으로 규정된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준치 시한 규정에 있어서 그 폐지기한이 '95. 12. 31. 자로 시효만료 되는바, 동조례의 준치기한을 '96. 12. 31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중인 청주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완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조례조치시한 1995년 12월 31일을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1998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했으나

번안동의에 의한 재심의시 당초 제출안과 동일하게 1996년 12월 31일로 하는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 8인, 찬성 8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. 신규 조문 대비표